

국방기술품질원

청렴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반부패·청렴 사연(수기)공모전

~7.24(월) 자정까지

글로벌 디펜스 뉴스

해외 최신기술동향

해외 국방 무기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채용공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창조적 변화를 선도하는
지식인을 원합니다.



클릭



업무자료·양식



품질인증



품질보증 자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와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청렴관련 정보공개

규정자료

규정 제정·개정 예고

군수품 품질업무에 개선사항은
품질 콜센터 119

055-7515-119

공지사항 입찰공고 세미나 공고

더보기 +

공지	2017년 순수/국제공동 기초연구 2차 자유공모 안내 new	2017-07-03
공지	국방기술품질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안내	2017-06-28
공지	2017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추가공모)	2017-06-28
공지	'17/'18년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및 설명회 안내 new	2017-06-27
공지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인증제도의 법제화 주요내용 공지	2017-06-16
공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국방기술품질원)	2017-06-12
공지	17년도 민군경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	2017-05-25

[보도자료] 태국 국방부 DSTD 및 DTI 관계자 일행 국방기술품질원...

2017-06-29

클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우편/방문신고

- 국방기술품질원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출무공동)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
- 국민권익위원회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2. 팩스신고

- 국방기술품질원 : 055-751-5031
- 국민권익위원회 : 044-200-7972

3.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이트 [신고하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방기술품질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클릭

부정청탁 사례

- (허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를 통해 담당 공무원 C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
- (행정처분 등 감경) OO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B가 「의료법」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B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청탁
- (채용) 중앙부처 소속 국장 A의 자녀 B가 OO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고 국장 A는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
- (직무상 비밀)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 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B의 친구인 변리사 C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C가 사무관 B에게 이를 부탁
- (계약)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OO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직원 C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
- (보조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OO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
- (생산·공급·관리하는 용역 등 사용·수익·점유) A는 OO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임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점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B의 친구 C를 통해 먼저 임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
- (성적) 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
- (병역판정검사) 아버지 A는 자신의 아들 B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지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 C를 통하여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D에게 아들 B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

금품등 수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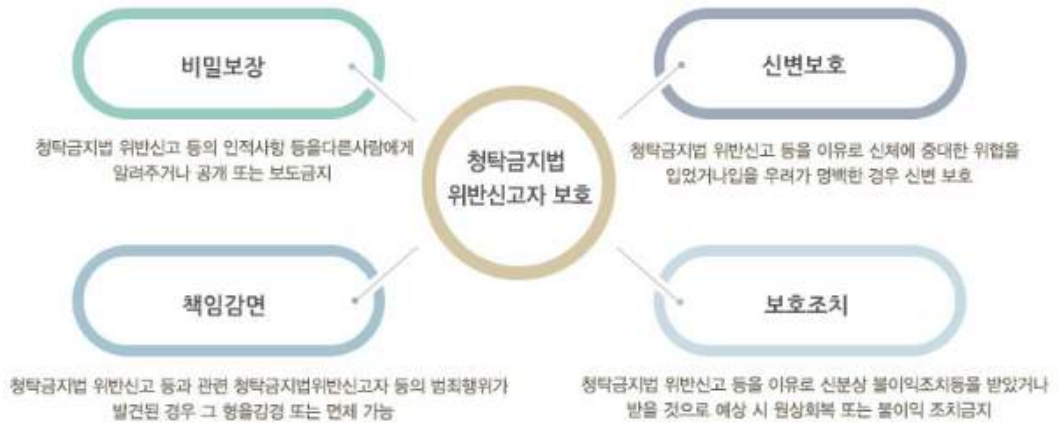
- 건설 관련 중앙부처 과장인 A가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 B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 주라"는 명목으로 150만원 수수
- 공무원이 자신이 집필한 책의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부하 및 산하 직무관련자 등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자들로부터 각 20만원 상당의 찬조금을 수수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사례

- 중앙부처 5급 공무원 A는 산하 공공기관의 강의요청에 따라 담당 업무에 대한 2시간 강의를 하고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인 30만원을 초과하여 50만원의 사례금을 수수

클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의 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절차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보상금 신청 기한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포상 및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 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